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5-73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5-74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5
2025-75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14
2025-76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25-77	거창군 애우 배넷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43
2025-78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5-79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홍 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73	발의일자	2025. 05. 30.
		발 의 자	이 홍 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집행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전 심사의 절차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안전 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함.

2. 주요내용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3조 제1항·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 대상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안전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재무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5. 14. ~ 2025. 05.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또는 처분 대상 공유재산별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또는 처분 대상 공유재산별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74	발의일자	2025. 05. 30.
		발 의 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도록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제50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5. 08. ~ 05. 1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거창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 따른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나. 관련 조문 : 지원사업(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51	51	51	51	51	255

3.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 5백만원

나. 디지털 교육 운영(강사료 및 장비임차) : 40백만원

다.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 양성 : 6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 순 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5. 3. 27.]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3. 27.] [대통령령 제35404호, 2025. 3. 26., 일부개정]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75	발의일자	2025. 05. 30.
		발 의 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1. 제안 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안 제5조)
- 마. 위원회 심의(안 제6조)
- 바.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안 제7조)
- 사.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5. 13. ~ 2025. 05.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호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의)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2.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정적 노력 (안 제3조)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나. 지원사유 발생 시 예산확보 예정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 순 화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76	발의일자	2025. 05. 30.
		발 의 자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거창군 공공디자인의 진흥 조례」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 주민참여 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5조)
- 나. 디자인의 기본원칙 (안 제6조)
- 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견 청취(안 제7조~제8조)
- 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제9조)
- 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등(안 제10조~제20조)
- 바.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제안(안 제21조~제22조)
- 사.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23조)
- 아. 전담부서 설치(안 제24조)
- 자. 추진협의체 및 관계기관 협력 등(안 제25조~제26조)
- 차. 교육 및 홍보(안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 등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4. 16. ~ 2025. 04.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등”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한다.

가. 공공디자인: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나. 범용디자인: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

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이나 활동

2. “공공디자인등 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디자인등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등을 수립·시행하고 공공디자인등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군수는 공공디자인등의 도시조성을 할 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등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공공디자인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디자인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
 3. 공공디자인등을 위한 사업
 4. 공공디자인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5. 공공디자인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7.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8.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등의 사업을 할 때 거창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3. 공공디자인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
 4. 공공디자인등 사업 추진 및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 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 ④ 제1항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나. 공간·산업·시각·서비스·범죄예방·범용·색채·경관 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도시계획, 구조, 교통,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심의신청 시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7조(심의절차)** ① 군수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준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등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등 사업
2. 범용디자인 관련 시범거리, 시범건축물,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3. 우범지역, 범죄취약지역, 학교·어린이놀이터 등 주변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개인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모사업 등과 병행하는 공공디자인등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및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범시설 등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③ 공공디자인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등 사업의 제안)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23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군의 각 부서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5조(추진협의체)**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전문가·군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6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거창교육지원청,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28조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별표 1] <전문개정>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제10조제1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파. 도로명판
도시 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 심의 : 공사비 3억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 자문 : 공사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협의 : 공사비 1억원 미만	

2. 건축물

분류	대상건축물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군청, 주민센터 등) 나. 군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마. 공공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심의 : 공사비 20억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 자문 : 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협의 : 공사비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과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3. 기타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 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 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 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 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 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 심의 : 공사비 3억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 자문 : 공사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협의 : 공사비 1억원 미만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용대상)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
(제10조제1항제4호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분류	세부항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범용디자인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	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별지 제1호서식] (제17조 관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사업				
신청부서명 (신청기관)		담당 팀장	(직·성명)	(전화)
		담당자	(직·성명)	(전화)
사업내용	사업위치	거창군		
	공사기간			
	공 사 비		설계비	
	규 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규격·수량	
	용 도			
	구조·형태			
	신청내역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0조 관련 ‘별표1’ 1. 사회 기반시설(도로시설물) 중 가로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심 의	당초심의 내용 및 반영사항			
	재심사유			
설 계 자	사무소명 (부서명)		주 소	
	직·성명		연락처	
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출력물(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규격 A3, 색상표현의 경우 컬러 출력물로 제출) - CD(또는 전자파일) 1매 ※ CD(또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요구 시 제출 ※ 표시내용: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등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 비용
- 2) 범죄예방 환경 설계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비용

가. 관련 조문: 지원대상 및 기준(안 제2조,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	2,100	2,100	3,000	3,000	3,000	13,200 (균비)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100,000 (도 30,000 균 70,000)	50,000 (도 15,000 균 35,000)	100,000 (도 30,000 균 70,000)	-	100,000 (도 30,000 균 70,000)	350,000 (도105,000 균245,000)

- 1) 5년이상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균비)과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균비, 도비)로 계속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는 아직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은 미편성.
- 2) 도표는 연도별 편성된 예산을 입력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음.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언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77	발의일자	2025. 05. 30.
		발 의 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대금 상환 시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 채무 이행불능 상태 농가 발생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준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5. 13. ~ 05.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78
----------	---------

발의일자	2025. 05. 30.
발 의 자	박수자,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김혜숙

1. 제안 이유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운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기술 정립 및 정착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안 제2조)
-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안 제5조)
- 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미래농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5. 09. ~ 05.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7.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스마트농업 확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
10.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스마트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의 임대에 관한 지원자격,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삭 제〉</u> 1.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신 설>

<신 설>

<신 설>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

-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7.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

10.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

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u><신 설></u>	<u>8. 스마트농업 확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u>
<u><신 설></u>	<u>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u>
<u><신 설></u>	<u>10.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u>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11.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신 설></u>	<u>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청년스마트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u>
	<u>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운영 및 임대</u>
	<u>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의 임대에 관한 지원자격,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 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자원 확보방안
5.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육성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 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과거 지원사업을 근거하여 향후 5년간 비용 추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연도 (2025년)	2차 연도 (2026년)	3차 연도 (2027년)	4차 연도 (2028년)	5차 연도 (2029년)	합계
총 비용(a - b)		1,664	2,364	3,737	476	476	8,717
세출	국도비	2,613	3,913	6,540	13	13	13,092
	군비	1,664	2,364	3,737	476	476	8,717
	소계(a)	4,277	6,277	10,277	489	489	21,809
세입	국비	2,010	3,010	5,010	10	10	10,050
	도비	603	903	1,530	3	3	3,042
	소계(b)	2,613	3,913	6,540	13	13	13,092

3. 관련 의견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공모) 사업 완료 이후 비용추계 재산정 필요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481	4,277	6,277	10,277	489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	4,000	6,000	10,000	212
경영실습입대농장	123	65	65	65	65
시설원예ICT융복합확산	63	22	22	22	22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240	124	124	124	124
미래형 스마트팜	55	66	66	66	66

작성자 : 미래농업과장 이 창 진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79	발의일자	2025. 05. 30.
		발 의 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신설(안제8조제2항제11호)

나. 경비 지원대상의 신설(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8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 「스포츠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체육시설사업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5. 09. ~ 2025. 05.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지원 <신 설>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지원 11.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

경비 지원대상 사업(제8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 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 전국단위, 도단위, 자체체육행사 대회 개최 및 참가 ○ 군민·면민체육대회 개최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회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 국제 체육대회 유치·개최 ○ 자매결연단체 간 체육대회 개최 ○ 직장인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체육활동 시설 등 여건 조성 ○ 체육바우처 지원
전문체육 활동 지원	○ 엘리트체육 활성화 사업 지원 ○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 운영비 ○ 수준별·종목별 지정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신 설></u> <u>청소년 체육활동 지원</u>	<u>○ 선수 발굴 및 육성</u> <u>○ 재능기부 활성화</u> <u>○ 대회 유치 및 개최</u> <u>○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1) 선수 발굴 및 육성 사업비

2) 대회 유치 및 개최비

나. 관련 조문: 경비의 지원대상(안 제8조②항)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전국체전 참가선수 육성	4,000 (균 70,000)	4,000 (균 70,000)	4,000 (균 70,000)	4,000 (균 70,000)	4,000 (균 70,000)	20,000 (균 20,000)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참가	16,000 (균 16,000)	17,000 (균 17,000)	17,000 (균 17,000)	17,000 (균 17,000)	17,000 (균 17,000)	84,000 (균 84,000)
청소년 우수선수 장려금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100,000 (균 100,000)
청소년 체육 아카데미	22,300 (균 22,300)	22,300 (균 22,300)	22,300 (균 22,300)	18,500 (균 18,500)	18,500 (균 18,500)	103,900 (균 103,900)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	80,000 (균 80,000)	120,000 (균 120,000)	90,000 (균 90,000)	90,000 (균 90,000)	90,000 (균 90,000)	470,000 (균 470,000)
엘리트운동부 육성	317,500 (균 317,500)	330,000 (균 330,000)	380,000 (균 380,000)	398,472 (균 398,472)	400,000 (균 400,000)	1,825,972 (균 1,825,972)
우수선수 육성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80,000 (균 8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4,800 (도 960 균 3,840)	4,800 (도 960 균 3,840)	4,800 (도 960 균 3,840)	5,280 (도 1,056 균 4,224)	5,280 (도 1,056 균 4,224)	24,960 (도 4,992 균 19,968)
스포츠강좌	115,000	159,600	199,200	216,345	216,345	906,490

이용권 지원	(국 80,500 도 10,350 군 24,150)	(국 111,720 도 14,364 군 33,516)	(국 139,440 도 17,928 군 41,832)	(국 151,442 도 19,471 군 45,432)	(국 151,442 도 19,471 군 45,432)	(국 634,544 도 81,584 군 190,362)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	-	-	-	88,260 (국 61,782 도 7,943 군 18,535)	88,260 (국 61,782 도 7,943 군 18,535)	88,260 (국 176,520 도 15,886 군 37,070)
					계	3,703,582

- 1) 5년이상 경남 초·중학생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9개 보조사업으로 계속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근소한 폭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임.
- 2) 도표는 연도별 편성된 예산을 입력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편성은 불요함.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임순행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2025. 1. 31.>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④ 삭제 <2021. 8. 10.>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3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2025. 1. 3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 기관·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

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3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스포츠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